

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독촉장 및 체납처분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

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독촉장,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, 수취인불명,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9. 18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



1. 건 명 :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독촉장, 체납처분 관련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 거 :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불임(공시송달 대상자 명단)
4. 공고기간 : 2026. 9. 18. ~ 2026. 10. 2.(15일간)
5. 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납부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울산지청 고용관리과(3층)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사항은 울산지청 고용관리과 (Tel: 052-228-3811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